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덕양구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02. 28.

고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다. 인가일 : 2025. 2. 20.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4-5번지 외 28필지
- 나. 면 적 : 11,040.3m²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 수 예 정 일 : 미정
- 나. 준 공 예 정 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 합 명 칭 :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이병태)
-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80번길 34, 101호(행신동, 구삼진연립)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의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구역 면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5,674.0m ²	11,040.3m ²

다) 조합원 변경

▶ 조합원 수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비고
115	+34	149	사업면적 확대에 인하여 조합원 추가 편입으로 조합원 수 증가

▶ 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	증여	상속	기타	계
13	3	1	0	17

라) 대의원 변경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비고
13	+4	17	기존 대의원 1인 사임 (2024.10.31.). 조합원 증가에 맞춰 대의원 수 1/10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2월 7일 정기총회에서 5인을 추가 선출

마) 조합정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명칭은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명칭은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사업 명칭 (변경)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	사업 구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으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5,674.00㎡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A1구역 으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11,040.3㎡ 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면적 (변경)
신설	제10조의2(신탁등기 의무 등) ①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 시행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등 금전출자 포함)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등기 시 자동 신탁종료, 권리관계 등 신탁에 필요한 사항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정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등기 기간 내에 신탁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대행자 선정 및 지정을 위한 신탁등기 의무 (신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③, ④ [동일] ② 제43조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⑤ 신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③, ④ [동일] ②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사항 (변경 및 추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1호~5호 [동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1호~5호 [동일] 6.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②~④ 동일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임원이 이사회의 불참 사유를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연속 3회 이상 또는 임기 중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④ [동일]	원 또는 그 배우자 ②~④ 동일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임원이 이사회의 불참 사유를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연속 3회 이상 또는 임기 중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④ [동일]	임원 해임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수정 보완(변경)
제20조(총회의 설치) ①~③ 동일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⑥ [동일]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법 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제20조(총회의 설치) ①~③ 동일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 사항 중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이사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⑥ [동일] ⑦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총회개최 7일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서면결의서도 함께 발송한다.	총회 소집 및 개최 관련 세부 사항 수정 보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한다. ⑧, ⑨ [동일]	⑧, ⑨ [동일]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16 [동일] 17. 추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u>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u> 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16 [동일] 17.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법 조항 변경 및 의결 사항 (변경 및 추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④동일 ⑤ 조합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⑦동일 ⑧ 추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⑤ 조합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u>다만, 서면결의의 형식과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따르고 총회 의사규칙이 없으면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u> ⑧ 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날인하고, 우편송부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사무실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서면결의서 수령 목록의 본인 확인 란에 본인이 서명하는 동시에 수령인란에 수령하는 조합 임·직원이 서명하여, 서면의결서 제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총회 의결방법 및 절차 수정 보완 (변경 및 추가)
제28조(이사회의 사무) 1~3, 5, 6 [동일]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사무) 1~3, 5, 6 [동일]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u>변호사, 법무사, 회계사·세무사 등</u>)	위임받은 사항 보완 (변경)
제32조(조합의 회계) ①~⑤ [동일] ⑥~⑦ 추가	제32조(조합의 회계) ①~⑤ 동일 ⑥ 제4항에 따라 <u>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이 관할 시정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⑦ <u>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1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관할 시장에게 회계</u>	회계 관련 사항 추가 보완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산술평균한 종전자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 해당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운영비, 용역비 등 정비사업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비 부담액은 현금청산 기준일까지 발생된 정비사업비를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 대비 현금청산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개인별 정비사업비로 한다. (개인별 정비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정비사업비 총액 X 손실보상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 ⑤ 제4항에 기재된 정비사업비를 현금청산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분양미신청자에게 대하여는 분양신청시작 전에 총	정비사업비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개인별 발생한 정비사업 부담금액을 계산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분양계약 미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체결시작 직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총회시에 조합원 개인별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담금액을 계산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각 결의한 일자 이후에 현금청산자가 될 때까지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용도 현금청산자는 부담한다.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도 이에 준한다. ⑥ 현금청산자는 제5항의 절차를 거친 제4항의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서 위 정비사업비 상당액을 상계하고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제35조(임대주택 건설) 조합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조항 (신설)
제34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①~② [동일, 항 번호만 ②~③으로 바꿈]	제36조(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의 동의) ① 조합은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③ [동일]	건축심의 동의 사항 추가 (신설)
제35조(이주대책) ①~② [동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입주 시까지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⑥ [동일] ⑦ 신설	제37조(이주대책) ①~② [동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등을 입주 시까지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⑥ [동일] ⑦ 조합원 본인의 소유물건지에 저당, 근저당, 가압류 등의 설정이 있을 경우 조합원이 직접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이주개시일부터 철거 예정일 전일까지 처	이주대책 관련 사항 보완 (변경 및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①~③ 동일 ④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 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③ 동일 ④ 조합원의 이주 후 <u>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신고</u> 및 멸실 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으로 법과 조항 (변경)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3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 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4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u>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u> 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상권,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수정 보완 (변경)
제41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동일] ②~⑦ 신설	제43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동일]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	분양신청 관련 세부사항 추가(신설)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조합은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조합정관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동일]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한다.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동일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 조항 변경 적용 (변경)
신설	제45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	보류지 조항 추가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u>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u>	
제43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4 [동일]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13 [동일]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4 [동일]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u>부과 및 지급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6~13 [동일]	항목 신설에 따른 정관 조항번호 수정(변경)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④ 동일 ⑤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수기추첨도 할 수 있다. 수기추첨의 경우에는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④ 동일 ⑤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u>한국부동산원</u> 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수기추첨도 할 수 있다. 수기추첨의 경우에는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으로 동호수 추첨 기관 변경 적용 (변경)
제50조(등기절차 등) ① [동일] ②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제1항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53조(등기절차 등) ① [동일] ② <u>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제1항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u> ③ <u>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현금청산자 등)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u>	등기절차에 대한 사항 수정 보완 (변경 및 신설)
제57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1~8, 9~15 [동일] ①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제60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1~8, 9~15 [동일] ①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자료의 공개와 보존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자금차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②~④ [동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8의2)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②~④ [동일]	관련 사항 보완 (추가)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3(행위제한 등)에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법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행위제한 구역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동일

다. 행위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지형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